

의안번호	2215708
의 퇴 인	이광희의원
회 답 일	2026.1.29.
추 계 번호	25D73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988억 4,4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10억원(연평균 2,00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안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198,844	193,257	198,034	202,932	207,933	1,001,000	200,200

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028년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채용시기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함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의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시·군·구의 경우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령¹⁾은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는 경우 시·도의 경우 6급 이하로,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관의 연봉은 2026년 일반임기제 연봉액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기본연봉액에는 변화가 없고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관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6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공간 활용 여부, 임차 여부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차료는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²⁾을 적용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인건비·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가. 정책지원관 증원 수

-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는 시·도는 419명, 시·군·구는 1,559명임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		
	의원정수(a)	정책지원관 정수(b)	증원가능 정수(c=a-b)	의원정수(a)	정책지원관 정수(b)	증원가능 정수(c=a-b)
서울	112	56	56	427	205	222
부산	47	23	24	182	86	96
대구	32	16	16	128	62	66
인천	40	20	20	123	59	64
광주	23	11	12	69	33	36
대전	22	11	11	63	31	32
울산	22	11	11	50	24	26
세종	20	10	10			
경기	156	78	78	463	222	241
강원	49	24	25	174	77	97
충북	35	17	18	136	63	73
충남	48	24	24	177	83	94
전북	40	20	20	198	102	96
전남	61	30	31	247	119	128
경북	61	30	31	281	133	148
경남	64	32	32	270	130	140
합 계	832	413	419	2,988	1,429	1,559

주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증원 대상에서 제외

주2: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없는 단층제 지방행정체제임

자료: 「제9회 하반기 지방의회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5,078	5,180	5,283	5,389	5,497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및 7급상당의 2026년 연간 보수는 각각 7,495만원, 6,585만원임

[표 3] 일반임기제 6급 및 7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6급상당	69,250	1,800	4,140	75,190
7급상당	60,326	1,680	4,080	66,086

주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³⁾
주2: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회 사무기구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을 적용
주3: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410억 6,800만원 등 2028년부터 5년간 7,400억 1,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4]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기준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총 소요 (a×b)						
6급	75	419	31,505	33,035	33,828	34,640	35,471	36,322	173,296
7급	66	1,559	103,028	108,033	110,626	113,281	115,999	118,783	566,721
합계	—	1,978	134,533	141,068	144,453	147,920	151,470	155,106	740,017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다. 기관부담금

-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86억 1,100만원 등 2028년부터 5년간 990억 3,300만원으로 예상됨

[표 5]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18,611	19,191	19,790	20,411	21,031	99,0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기본경비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의 분야별 지출 규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0.5%⁴⁾
 -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총액에 지방자치단체 평균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89억 1,900만원 등 2028년부터 5년간 1,517억 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본경비	28,919	29,613	30,324	31,051	31,797	151,7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

마. 자산취득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8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51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02억 4,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자산취득비	10,246	-	-	-	-	10,2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 결과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988억 4,4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1조 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141,068	144,453	147,920	151,470	155,106	740,017
기관부담금	18,611	19,191	19,790	20,411	21,031	99,033
기본경비	28,919	29,613	30,324	31,051	31,797	151,704
자산취득비	10,246	-	-	-	-	10,246
합 계	198,844	193,257	198,034	202,932	207,933	1,00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이 2028년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채용시기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